

심 사 보 고 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9
----------	-----

2020. 10. 23.(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0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2020년 10월 14일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민간위탁 사업

(단위: 천원)

기관명	사무명	사업대상	위탁기간	사업비
충청북도 교육청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가정·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중·고 남학생)	‘21.1.~12.(1년)	249,967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괴산군 거주 주민,교사,학부모 학생	‘21.3.~12.(10개월)	100,000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과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동안 가정형 Wee센터 시설 운영과 대안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 시설 운영에 경험이 많은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시설 운영에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중·고 여학생 대상 ‘청주 가정형 위(Wee)센터’ 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임

○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괴산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등 업무를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총 1억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군 단위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²⁾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센터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21년도 민간위탁 사업 목록

(단위: 천원)

순	부서명	사무명	사업대상	위탁기간	사업비
1	학교 자치과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가정·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중·고 남학생)	2021.1.~12.	249,967
2	괴산중평 교육지원청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괴산군 거주 주민, 교사 학부모, 학생	2021.3.~12.	100,000

□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1.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9항

2) 추진 필요성

-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주거), 교육, 상담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생활 공동체 형태의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청소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은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례관리 및 운영 가능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1)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중·고 남학생을 위한 기숙형 성장·치유 프로그램 운영
- 2)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형 위(Wee)센터 고유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 1) 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242-12
- 2) 인원구성: 총 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생활지도사 2명)
- 3) 시설 면적: 토지 440㎡, 건물 251.73㎡
- 4) 위탁시설
 - 1층: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2개, 상담실 1개
 - 2층: 방 2개, 화장실 1개, 수납실 2개

5) 위치(지도)



마. 민간위탁 기간: 2021. 1. 1. ~ 2021. 12. 31. (12개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 추진 기관 공고: 2020. 12. 7.(월) ~12. 14.(월)

2)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2020. 12. 18.(금)

3) 운영 관련 협상, 교부 검토 및 통지: 2020. 12. 28.(월) ~12. 31.(목)

사.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1) 2021년도 위탁운영비: 249,967천원

2) 산출내역

(단위: 천원)

과목			2021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인 건 비	인 건 비	급여	137,148	센터장 3,570,000원 × 12월 = 42,840,000원
				팀 장 2,443,000원 × 12월 = 29,316,000원
				팀 원 1,940,000원 × 12월 = 23,280,000원
				생활지도원 1,738,000원 × 12월 × 2명 = 41,712,000원
		명절수당	5,000	500,000원 × 5명 × 2회 = 5,000,000원
		퇴직연금	12,196	총급여(급여+명절수당+복리후생비) 총급여 148,348,000원 ÷ 12 = 12,196,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15,917	국민연금 148,348,000원 × 4.5% = 6,694,200원
				국민건강 148,348,000원 × 3.335% = 4,961,150원
				노인장기요양 148,348,000원 × 3.335% × 10.25% = 501,000원
				산재보험 148,348,000원 × 1.05% = 1,536,000원
고용보험 148,348,000원 × 1.65% = 2,414,000원				
직책수당	1,200	100,000원 × 2명 × 6회 = 1,200,000원		

		과목		2021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복리후생비		3,000	50,000원×5명×12회=3,000,000원		
		수당		5,558	시간외수당 - 센터장 17,960원×8시간×7회×1.5배=1,509,000원 - 팀 장 12,570원×8시간×7회×1.5배=1,056,000원 - 팀 원 9,920원×8시간×7회×1.5배=834,000원 연차수당 2,208,640원(4명분) - 팀장 25,140×8시간×6일=1,207,000원 - 생활지도원 19,840원×8시간×6일×2명=952,000원		
		합계		180,019			
시설 운영 비	관 리 운 영 비	직원연수 및 회의비		400	100,000원×4회=400,000원		
		출장비 및 여비		400	20,000원×20회=4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459	사무용품 213,750원×4회=855,000원 우편 및 수수료 40,000원×12개월=480,000원 소모품비 150,000원×12개월=180,000원 정수기임차료 27,000원×12개월=324,000원		
		협력기관 회비 및 업 무추진비		560	전국가정형위센터협의회비 200,000원×1회=200,000원 기관운영비 30,000원×12개월=360,000원		
		운영위원회		720	운영위원회수당 30,000×8명×3회=720,000원		
		제세 및 공공요금		8,279	전기요금 373,250원×12개월=4,479,000원 상하수도요금 200,000원×12개월=2,400,000원 전화 및 인터넷 요금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일반관리비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상해보험료 200,000원×1회=200,000원		
		시설유지비		7,120	화단관리 250,000원×4회=1,000,000원 보안경비 1,320,000원×1회=1,320,000원 홈페이지관리 1,000,000원×1회=1,000,000원 전기안전점검 1,000,000원×1회=1,000,000원 소독 및 시설보수700,000원×4회=2,800,000원		
		비품비		500	비품 250,000원×2회=500,000원		
		홍보비		2,000	홍보(리플릿) 2,000,000원×1회=2,000,000원		
		소 계		23,438			
		사 업 비	사 업 비	의료 건강지원프로그램		2,760,000	체력증진 (요가, 생활체육 등) 100,000원×8명×2회=1,600,000원 건강교육 100,000원×2회=200,000원 질병관리(병원 및 의약품, 심리검사 등) 100,000원×8명×12개월=960,000원
				생활지원사업		23,460,000	생활지원비(교통지원, 물품지원 등) 20,000원×8명×12개월=1,600,000원 급량비 3,100원×8명×2식×365일=18,104,000원 간식비 1,000원×8명×365일=2,920,000원 유급자원봉사자 8,600원×3시간×20일×3개월=516,000원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4,000,000	집단상담 100,000원×10회=1,000,000원 개인상담 50,000원×3명×20회=3,000,000원

과목			2021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교육진로 프로그램	3,460,000	학습 및 진로지원(교육비) 35,000원×8명×12개월=3,360,000원 교재교구비 100,000원×1회=100,000원
		가족복귀, 학교적응	1,910,000	홈커밍데이 400,000원×2회=800,000원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가정방문, 가족상담 등) 30,000원×12개월=360,000원 학교적응프로그램(사제동행 등) 50,000원×15회=750,000원
		체험활동 프로그램	4,160,000	체험활동비 70,000원×8명×6회=3,360,000원 전국가정형위센터협의회 청소년대회 100,000원×8명=800,000원
		캠프	5,160,000	캠프비용[캠프 1회 비용 산출내역] - 숙박비 800,000원×2회=1,600,000원 - 교통비(기차, 고속버스) 100,000원×8명×2회=1,600,000원 - 활동비(입장료, 체험등) 500,000원×2회=1,000,000원 - 식비 15,000원×8명×4식×2회=960,000원
		자치운영프로그램	700,000	자치프로그램 70,000원×10회=700,000원
		지역자원연계	900,000	결연멘토 50,000원×3명×6회=900,000원
		소계	46,510,000	
		합계	249,967,000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1) 심의 일시: 2020. 9. 17. (목)

2) 심의 안건: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참고사항

가. 2021.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관계 법령

다.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위탁현황

- 업체 및 기간: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2017.12.~2020.12.)

- 민간위탁

(단위:천원)

계약차수	1차	2차			3차	비고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위탁 사무보고(11월)
위탁금액	62,937	219,184	239,132	246,706	249,967	2021.남학생 가정형 위센터와 동일하게 위탁금액 설정

2021.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학교자치과

1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3. 2.]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일부개정.]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추진 배경

□ 가정폭력,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이혼, 방임 등 가정문제로 인한 위기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주거공간을 갖춘 가정형 Wee센터 필요

□ 위기학생을 위한 안정적 돌봄·교육·상담치료 병행 기관의 필요성 대두

3 추진 목적

□ 가정폭력,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이혼, 방임 등 가정문제로 인한 위기학생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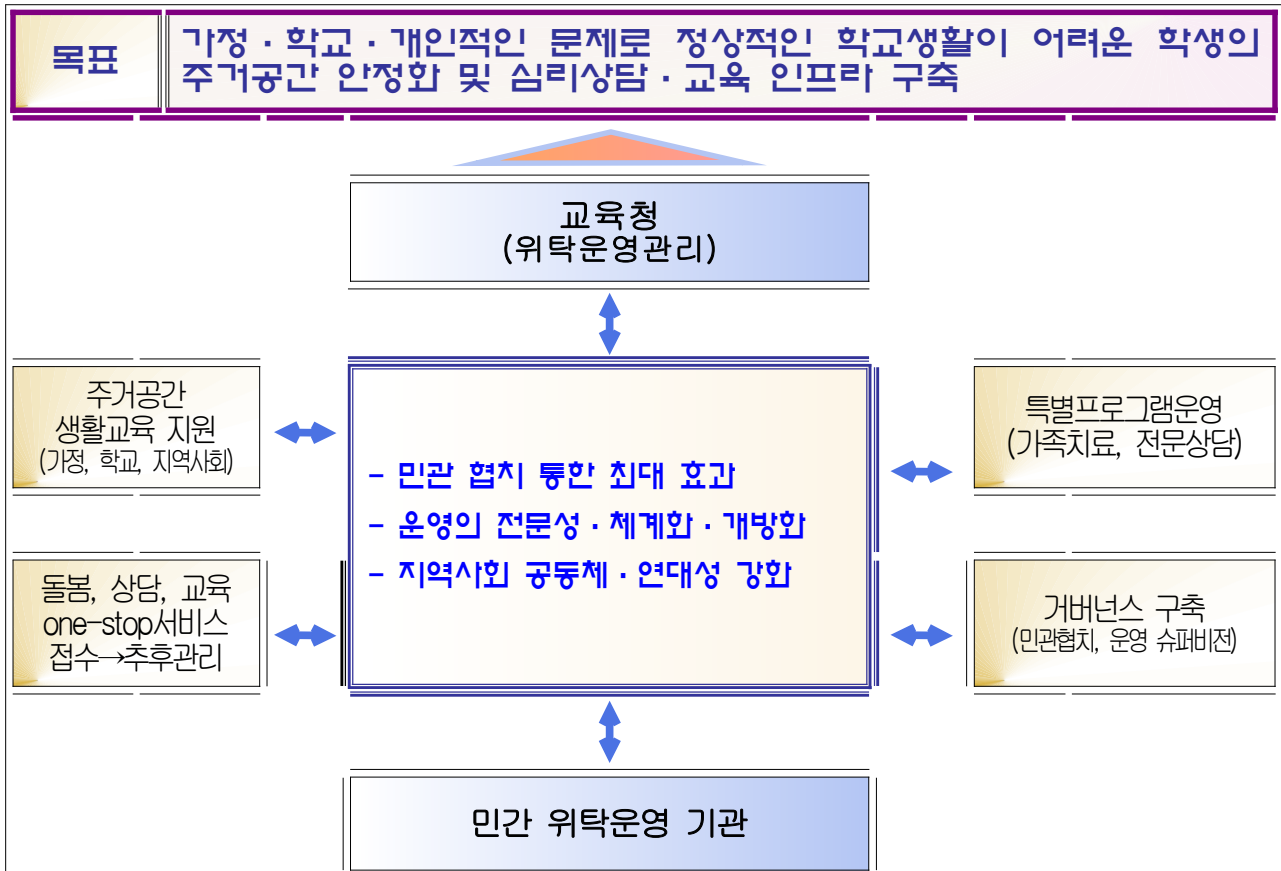
□ 학교폭력 위협, 성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

려운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생활보호를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각종 일탈·비행으로부터 위기 학생 보호

4 추진 방향

1. 민간위탁 추진 체계도



2. 추진 방침

- 가.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심리상담·교육 공간이 결합된 안정된 공간 제공
- 나. 전문적인 상담치유·돌봄·위로·회복을 위한 One-Stop 서비스제공
심리상담-기본교과-대안교육-진로교육 통합적 제공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
- 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개별적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추진 경과 및 추진 일정

추진일정	내 용
2018. 10. 02.	○ 청주교육지원청 현안업무보고 및 우선 검토 지시 - 초등, 중등(남, 여)분리 ⇒ 가정형 위(Wee)센터 3개 필요
2019. 04. 15.	○ 신규 가정형 위(Wee)센터 설치 방향 결정 - 교육감 수기결재 [위탁형 방향성 결정]
2019. 04. 25.	○ 2019. 가정형 위(Wee)센터 구축 계획(안) 교육부 제출 ※ 학교자치과-5716(2019.04.25.)
2019. 09. 05.	○ 가정형 위(Wee)센터 구축사업 일몰 및 지역현안사업 신청 안내(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3280(2019.09.05.)
2020. 1월	○ 지역현안사업 신청 부적정 검토의견(건물신축, 매입불가) 수신에 따른 자체예산 편성(1차 추경) 가능 여부 검토
2020. 1월~2월	○ 가정형 위(Wee)센터 설치 추진팀 운영 - 설치 위치, 건물별 특성, 구매 요건 등 분석(시장조사)
2020. 3월	○ 1차 추경 신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 제출
2020. 9월	○ 민간위탁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021. 12월	○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2021. 3월	○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개소식

4. 운영 방법

가. 민관 협치 방식 운영: 가정 및 청소년 위기 등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협치'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미

- 1) 도교육청: 설립 총괄, 거버넌스(협치) 시스템, 시설확보, 예산확보
- 2) 민간 위탁기관: 센터 운영, 학생관리, 공간 리모델링, 지역사회 연계

나. 학생복지 및 관리

- 1) 위탁학생은 원적교에서 학적을 관리하며, 위탁교육기간의 출석·수업·평가 결과 등은 도교육청 규정 준수

- 2) 위탁교육 대상자는 위탁교육 기간 중 합숙을 원칙으로 함
- 3) 단기형 위탁학생은 치유 정도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4) 위탁교육 대상자 경비는 숙식비를 비롯한 위탁교육비 전액 무료
- 5) 가정형 위(Wee)센터의 민간위탁교육 기관 지정

5. 위탁 대상자

순위	유형	대상	비고
1	가정폭력	-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한 중·고 남학생	
2	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 학업중단위기 중·고등 남학생	
3	위기학생	- 가정위기로 보호가 필요한 중·고 남학생	

6. 민간위탁 운영 형태 및 방법

가. 운영개요

기관명	대상 성별	학교급	운영 형태	숙박 여부	입소 기간	학력 인정	정원 (최대)	입소 대상	운영 방식	비고
충북 가정형 위(Wee) 센터	남	중·고	위탁	기숙 통학 혼합	3~6월 (연장 가능)	○	8명 (12명)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위탁 운영 (주말 포함 운영)	2021 3월 개소

나. 위탁방법

- 1) 대안기숙형 : 본 센터에서 기숙과 대안 프로그램을 병행 함
- 2) 센터 기숙 및 학교 출석형(소속교 등교 원칙, 위탁교육 가능)

다. 운영시간

- 1) 상시운영(학생 의사 및 가정여건에 따라 주말에도 거주 가능)
- 2) 위탁형태에 따른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7. 위탁 프로그램 운영 내용

가. 상담 및 치유: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가족치료, 심리검사

나. 특성화 프로그램: 개인맞춤형 학습 멘토링, 대안교과, 의사소통

다. 예술·문화활동: 각종 문화활동, 캠프, 자원봉사 활동

일상생활기술(의·식·주)

라. 교육연수: 학부모교육(코칭포함), 교사 및 관련자 연수, 직원연수

마. 홍보: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자 인력풀 구축

5 세부추진계획

1. 가정형 위센터 추진 일정

계획수립 ('20. 3월)	시설구축 ('20. 9월)	공모 및 선정 ('20. 12월)	사업수행 ('21. 1~3월)	1차년도 평가 ('21.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확보 (건물구입비-1추) ◦타시도운영 현황 파악 -건물확보현황 -센터운영현황 ◦구축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건물 구입 ◦리모델링비 - 2추 편성 ◦비품 및 운영 비('21년 본 예산 편성) ◦민간위탁 추진 세부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관 공모 ◦위탁기관 선정위 원회 구성 ◦위탁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품구입 ◦홍보 및 안내 ◦사전 운영협의 ◦대상학생모집 ◦개소식 ◦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결과보고 ◦평가 ◦우수사례발표 ◦운영보완

2. 위탁학생 모집 절차

학교	가정형 Wee 센터	학교	학생, 학부모	학교	가정형 Wee 센터	학교	학생	가정형 Wee 센터
위기학생 발생, 위탁 문의	내방 면접 입소 사례 회의	위탁 소견서 접수	위탁 교육참가 동의서	위탁 교육 신청서	수탁 통보	입소 지도	입소 (보호자 동행)	위기학생 치유 교육활동

- 가. 위탁 문의 및 내방 면접: 학생과 보호자가 내방하여 상담진행
- 나. 위탁 소견서 발부: 내방 면접 결과에 따라 위탁 소견서 학교 발송
- 다. 입소 여부 결정: 학생 의사, 가정환경 등 고려 입소 사례회의 실시
- 라. 위탁 제외 고려 대상
 - 학업중단 청소년
 - 전염성질환, 정신증(psychosis) 등으로 인하여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같은 사건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게 될 경우
 - 기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
- 마. 위탁 참가신청서 제출: 학생과 보호자가 참가신청서 작성 및 학교장 참가 의견서 제출
- 바. 수탁 통보: 가정형 위(Wee)센터에서 학교로 수탁 및 일정 통보
- 사. 입소: 보호자와 동행하여 입소
- 아. 위탁 교육 실시: 위탁 교육 실시(3~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 자. 위탁 종료: 학교 및 가정으로 복귀

6 **민간위탁 공모 추진 기본 방향**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 나. 사업내용: 가정폭력, 학교폭력(성폭력) 피해자, 이혼, 방임 등 가정문제로 인한 위기학생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주거공간을 통하여 안정적 돌봄·교육·상담치료 병행
- 다. 운영기간: 2021. 1. 1. ~ 2021. 12. 31. (12개월)
- 라. 민간위탁 운영 예산: 249,967천원
- 바. 추진방법: 충청북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제안·공모
- 사. 선정 기관 수: 1개 기관
- 아. 응모 대상: 공모에 의한 적부 심사
 - 충청북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청소년관련기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 상담관련기관 중 전문상담사나 청소년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추진 일정

순	추진 단계	세부 내용	비고
1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 확정	2020. 9.
2	심사계획 수립	심사계획 확정	2020. 12.
3	공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20. 12. 07.(월) ~ 14.(월)
4	공모접수	신청서 접수	2020. 12. 08.(화) ~ 16.(수)
5	선정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2020. 12. 18.(금)
6	최종선정 공고	서류심사 산출기준에 의한 점수	2020. 12. 23.(금)
7	업무계약	업무계약 체결 및 실무협의	2020. 12. 28.(월) ~ 31.(수)
8	사업 운영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2021. 01. ~ 12.
9	운영현황 점검	운영 현황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운영기간 중 1~2회

3. 신청 접수 방법

- 가. 공고기간: 2020. 12. 8.(월) ~ 14.(월)
- 나. 공고안내: 본청 홈페이지에 공고
- 다. 서류 제출 기간: 2020. 12. 8.(화) ~ 16.(수)
- 라. 서류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및 인편 제출
- 마. 제출 서류 내용 및 서식

순	제출 서류 내용	부수	비고
1	「2021.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사업 계획서	6부	[서식 1]
2	「2021.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사업 공모 신청서	1부	[서식 2]
3	공모 신청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3]
4	사업(연구) 인력 보유 현황	1부	[서식 4]
5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1부	[서식 5]

순	제출 서류 내용	부수	비 고
6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이내, 연관분야 사업 실적) ※ 사본 증명 포함	1부	[서식 6]
7	서약서	1부	[서식 7]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8]
9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1부	
10	교(강)사·상담(치료)관련 소지자격증 사본 (스캔하여 파일첨부)	1부	
11	관련 강사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1부	
12	기타 증빙자료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USB에 저장 후 서류와 함께 제출

4. 사업계획서 평가

가. 공모 선정위원 구성: 내·외부 위원 별도 위촉 후 추진

나. 서류 심사 기준: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적합성, 교육여건,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다. 평가항목: 자격요건 24점, 사업계획 54점, 사업성과 22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자격요건 (24)	(지원대상) 위탁 사업자의 자격요건							
	-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이 있는 자	6	6	5	4	3	2	
	-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6	6	5	4	3	2	
	- 위탁 사업 수행에 전문성이 있는 경우	6	6	5	4	3	2	
	-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위탁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6	6	5	4	3	2	
사업계획 (54)	(연계성) 사업 목적과 신청서 계획의 연계성							
	- 신청사업계획이 도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	10	10	8	6	4	2	
	- 사업의 독창성, 기대효과 등의 우수성 여부	10	10	8	6	4	2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신청된 경우(지원탈락)							
	(사업계획성)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타당성							
- 추진일정 및 내용, 추진방법 등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적절성	12	12	10	8	6	4		
- 사업추진의 주기적 관리 점검계획 수립여부	12	12	10	8	6	4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 성과 (22)	(목표설정)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지표와 측정방법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10	10	8	6	4	2	
	(기대효과) 충북교육 발전 기여도와 파급효과 - 수혜범위 등을 고려한 수혜도	6	6	5	4	3	2	
	- 사업전·후 대비 충북교육 발전 기여도 등 기대효과	6	6	5	4	3	2	
	(사업실적)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3년) - 사업추진실적 우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성과 실적이 있는 경우	10	10	8	6	4	2	
	- 사업추진실적 저조: 성실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을 미추진한 경우(△5)							
합 계		78						

바.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 043-290-2775)

6. 기타 유의사항

가.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 계획서(A4 규격) : 표지 양식은 [서식 1]에 의거 작성

1) 총 6부 제출

2) 이중 1부의 표지에만 (대표)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3) 나머지 5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미기재

다. 제출된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화 함

라. 제출된 신청 서류에 명시된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사업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마. 수탁기관 직원 중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공모 신청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 가능

- 사. 공모 신청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아. 신청 현황과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자.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탁 신청기관·단체책임으로 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7 기대효과

-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 및 심리안정으로 긍정적 자아형성과 적응력 향상
-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증진으로 사회 통합 기여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 영위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⑧ 생략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3. 2.]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일부개정]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위센터)

① 위(wee)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위(wee)센의 장이 된다.

□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 사유

1)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마을교육공동체 자원 발굴 및 통합관리 및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 활성화

2)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

다. 위탁 내용: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 위탁

라. 위탁 기간: 2021. 3. ~ 12.(10개월)

마. 위탁 비용: 100,000천원

바. 운영인원(안): 3명(센터장, 팀장, 직원 등)

사. 위탁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 신청자 모집

아. 수탁 자격: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민간위탁 업무범위

가.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다.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의 행정·회계 업무 지원

라. 마을학교 공모사업 지원, 운영관리와 성과·평가관리

마.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관리

바. 마을교육협의체 및 지역교육력 회복실천공동체 발굴 지원

사.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운영

아.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가칭)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마을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4237호)

II 추진 배경

민간위탁 사유

○ 추진 사유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 협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필요**
- 참여 주체들 간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 방식 및 공동의 관점,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풀뿌리 교육자치 기반 형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필요**
-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교육단체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지자체, 교육기관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조직체계 필요**
- 교육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분야에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위한 조직 체계 필요**

□ 타시도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 운영 방식 비교

구분	직영	민간단체 위탁	재단 법인 산하형 (공공 위탁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절차에 따른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전문성 활용 극대화 · 단체·법인 소속의 시민활동가 위치에서 소통, 협력,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유리 · 다양한 소통과 협치의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 효율적인 사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의 유연성 및 연속성 부족 · 사업의 경직성, 행정업무 과중 · 지자체- 교육청간의 협력의 어려움 · 주민참여 및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단체·법인의 역량에 따라 사업 추진의 불안정 우려 · 위탁기관의 책무성과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위험부담) · 수탁기관 변경시 업무 연속성 저해 ·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와 독립성 확보 어려움 · 정치적 개입이나 리더십 변화에 따른 영향 · 민간소통이 다소 부족 · 업무방식에 있어 다양성, 창의성, 역동성 부족

○ 타시도 운영 사례

구분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순천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화성이음터센터
개소일	2019. 1.	2018. 10.	2016. 8.
설립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1.)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경비지원 및 위탁)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0.)
설립 목적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체험 학습 및 방과후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지원	마을과 학교, 그리고 주민을 잇는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조성
운영 방식	지자체 직영 (세종시청 교육지원과)	민간위탁 (순천시청 평생교육과)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공위탁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산하)
역할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체험학습 및 방과후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	순천시- 순천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상생과 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	학교안과 밖의 배움을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과 교육의 중심 허브로서의 기능
특징	마을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주민자치와 연계한 돌봄 및 방과 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제 3지대 협력센터 운영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공동체 교육주체로 성장	이음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시민과 함께 활발하게 추진

III

민간위탁 추진방향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효과성, 수행능력 등 업무운영 역량의 적합성·우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격기관 선정
- 위탁기관(법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IV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민간위탁 개요

가. 사업명: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나. 추진 사유

- 민간부문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마을교육공동체 자원 발굴 및 통합 관리 및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 활성화
-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

다. 추진 방법

사람을 중심으로

협력을 기반으로

폭넓게 연대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사 랑	중간 지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양성 - 마을교사 양성, 마을코디네이터 양성,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협 력	교육청, 괴산군, 학교 중간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활성화 ○ 넘나들며배우기 선도 교사연수 ○ 학교- 마을 연계 교육과정 프로젝트 운영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협업
연 대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산군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운영 ○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 운영 ○ 괴산형 마을교육공동체 로드맵 구축
지속가능	어린이·청소년 학부모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치배움터 ○ 마을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돌봄시스템 구축 ○ 학교, 마을의 공간 공공화

라. 위탁 내용: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 위탁

마. 위탁 기간: 1년(2021.3. ~ 2021.12.31.)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3년

바. 위탁 비용: 2021년 1억원

※ 위탁사무량, 예산의 변동에 따라 매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운영인원(안): 3명(센터장, 팀장, 직원 등)

※ 인력규모는 연간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아. 위탁 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 신청자 모집,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자. 수탁 자격: 괴산군 소재 교육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차. 민간위탁 향후 추진 일정(안)

1)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상정: 2020. 10. ~

2) 민간위탁금 2021년 본예산 편성: 2020. 12.

3) 민간위탁 절차 이행(공모, 수탁자 선정): 2021. 1.

4)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 운영 개시: 2021. 3. ~

2. 민간위탁 업무범위

가.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다.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의 행정·회계 업무 지원

라. 마을학교 공모사업 지원, 운영관리와 성과·평가관리

마.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관리

바. 마을교육협의체 및 지역교육력 회복실천공동체 발굴 지원

사.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운영

아.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3.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내용

가. 지역교육력 회복 실천 공동체 운영

1) 사업기간 : 2021. 4. ~ 계속

2) 구성 : 수시적 총원 · 변동

- (지역 인적자원) 지역활동가, 학부모, 전문상담인력,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 (교육지원청, 학교) 괴산중평교육지원청 및 괴산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 (기타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교, 청소년단체, 도서관, 박물관 등

3) 사업방법 : 매월 1회 소담회 운영

4) 사업내용 : 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방향 제시, 마을-학교 연계 사업 개발 및 조정,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선진지 탐방, 관련 우수사례 수집 · 발굴,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5) 소요 예산 : 1,000천원

나. 괴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1) 사업기간 : 2021. 4. ~ 계속

2) 구성 : 괴산군 평생학습팀, 괴산중평교육지원청, 괴산행복교육어울림

3) 사업방법 : 매월 1회 실무협의회 운영

4) 사업내용 : 괴산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공동 사업계획 토론 및 실행, 행 · 재정적 지원 협의 등

5) 소요 예산 : 0원

다. 괴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 구 성 : 전담 인력 배치 3명

2) 기 능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 마을·학교·지역사회 연계
- 마을학교 사업 점검, 컨설팅
- 괴산형 마을교육공동체 로드맵 설계
- 마을교육자원 발굴, 마을강사 양성
-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이 가능한 청소년 교육지원체제 구축

3) 소요 예산 : 인건비 + 운영비

라.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1) 기 간 : 2021. 4. ~ 12.

2) 참여대상 : 마을학교 운영단체, 마을 교사 등

3) 사업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조직문화, 지역자원 네트워크, 공동체 비전빌딩,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4) 소요 예산 : 10,000천원

마. 교육 포럼 개최

1) 기 간 : 2021. 4. ~ 12.

2) 참여대상 : 학부모, 교사, 시민활동가 등

3) 사업내용 : 시민의 교육정책 관심 유도 및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포럼 개최

4) 소요 예산 : 2,000천원

바. 찾아가는 대상별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1) 기 간 : 2021. 4. ~ 12.

2) 참석대상 : 학교 관계자,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를 준비하는 단위

3) 사업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 마을교육자치회 사업 설명

* 교육지원청 협조, 학부모 및 학교 참여 유도

* 군청 협조, 주민자치회 및 주민단체 참여 유도

4) 소요 예산 : 4,000천원

사. 괴산 마을학교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 1) 기 간 : 2021. 4. ~ 12.
- 2) 대 상 : 마을학교 시범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된 곳 또는 주체들의 모임이 가능한 단위
- 3) 사업내용 : 마을학교 공모사업(마을학교 시범운영 단위, 학습동아리) 지원, 교육, 컨설팅
- 4) 소요 예산 : 0원

아. 교육청·학교·교사와 연계하여 마을을 품은 교육과정

: 교사직무연수, 마을교육과정 관련 교육, 워크숍 등

- 1) 사업기간 : 2021. 5. ~ 12.
 - 2) 대 상 : 마을교육과정을 고민하는 현장교사
 - 3) 사업내용 :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 4) 소요 예산 : 괴산교육지원청과 연계
- ※ 교육지원청과 행·재정적으로 연계하여 진행

자. 2021. 괴산마을교육공동체 결과보고서

- 1) 사업기간 : 2021. 5. ~ 12.
- 2) 대 상 : 2021년 마을학교 운영 단체, 학습동아리, 마을교육자치회 등
- 3) 주요내용 : 활동보고서
- 4) 소요 예산 : 1,000천원

4.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

구 분	내 용
사전조사 (소관부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사례,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	↓

구 분	내 용
추진계획 (소관부서)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소관부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등
↓	↓
의회 동의안 제출 (소관부서)	도의회 동의
↓	↓
수탁기관 선정 (소관부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
계약체결 (소관부서)	위·수탁 계약 체결 ⇒ 위·수탁 계약서 시본을 총괄부서의 장(도교육청 행정과장)에게 제출
↓	↓
사후관리 등 (소관부서)	지휘·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종합성과평가 등

V

기대효과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민·관·학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 협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풀뿌리 교육자치 기반 형성

관계 법령 발췌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센터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나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 ② 생략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위탁기관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7. 1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7. 12.>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